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준희 의원)

의안 번호	제 2460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9일

발 의 자 : 임정옥·임준희 의원

찬 성 자 : 이인락, 최재란, 정순희,
심광식, 이재식, 박종호
의원

(6 명)

1. 제안이유

양천구 어르신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식지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
- 다. 명예기자 등 위촉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로 하고, “구의회”를 “양천구의회”로 하며,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을 “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으로 하고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를 “소식지 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 소식지(이하 “양천구소식지”라 한다)
2. 양천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
3. 양천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꿈나무 소식지”라 한다)

제3조 조명을 “발행”으로 하고, “하되”를 “하되, 어르신소식지와 꿈나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소식지”를 “양천구소식지”로 하며, 제7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르신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어르신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4. 어르신들의 의견 및 투고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꿈나무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에 관한 사항
2. 학교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 예술 정보 및 어린이 문학작품 등에 관한 사항
4. 학습정보 제공
5.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수준높은”을 “수준 높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양천구 의회”를 “양천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2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신문사”를 “언론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40명 내외의”를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 양천구소식지 : 30명 이내

2. 어르신소식지 : 15명 이내

3. 꿈나무소식지 : 70명 이내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 양천구소식지 및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꿈나무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있 으며 그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및 기념품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중 “광고를”을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현행 제5호를 제6호로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기자 및 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정 및 각종 생활정보와 구의회 소식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u> ----- <u>양천구의회</u> ----- <u>양천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u> ----- ----- <u>소식지 발행에</u> ----- -----</p>
<p>제2조(명칭) <u>소식지의 제호는“양천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으로 한다.</u></p>	<p>제2조(명칭) <u>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 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양천구 소식지(이하 “양천구소식지”라 한다)</u> 2. <u>양천구 어르신 소식지(이하 “어르신소식지”라 한다)</u> 3. <u>양천구 어린이 소식지(이하 “꿈나무 소식지”라 한다)</u></p>
<p>제3조(발간) <u>소식지는 월 1회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p>	<p>제3조(발행) ----- ----- <u>하되, 어르신소식지와 꿈나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u> ----- -----</p>

현 행	개 정 안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의 <u>수준높은</u> 편집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u>수준 높은</u> ----- ----- ----- -----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 ----- -----
가. 서울특별시 <u>양천구 의회가</u>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가. ----- <u>양천구의회가</u> ----- -----
나.~라. (생략)	나.~라.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u> 호선한다.	③ ----- ----- <u>위원 중에서</u>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u> 수 있다.	④ ----- ----- ----- <u>한 차례</u> <u>만 연임할</u> -----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⑤ -----

현행	개정안
<p>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u>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u>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p> <p>2. <u>기타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u>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p> <p>제9조(자문의뢰) 소식지의 편집수준 향상을 위하여 <u>신문사</u>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p> <p>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 <u>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4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신 설></p> <p>② <u>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p> <p>-----</p> <p>1. ----- <u>2회 이상</u> -----</p> <p>-----</p> <p>2. <u>그밖에</u> -----</p> <p>-----</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p> <p>-----</p> <p>제9조(자문의뢰) -----</p> <p>----- <u>언론사</u> -----</p> <p>-----</p> <p>제10조(명예기자 등 위촉운영) ① ----- <u>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u> -----</p> <p>-----</p> <p>1. <u>양천구소식지 : 30명 이내</u></p> <p>2. <u>어르신소식지 : 15명 이내</u></p> <p>3. <u>꿈나무소식지 : 70명 이내</u></p> <p>② <u>양천구소식지 및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꿈나</u></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p> <p>제11조(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p> <p>1. ~2. (생략)</p> <p>3.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예기자의 기고, 독자투고, 퀴즈 등에 자료를 제공한 <u>자중</u>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p> <p><신 설></p> <p>제12조(광고게재) 소식지에 <u>광고를</u>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p>	<p><u>무소식지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제11조(실비보상 등) ① ----- ----- ----- <u>범위에서</u> ----- -----</p> <p>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u>사람 중</u> ----- -----</p> <p>② <u>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및 기념품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u></p> <p>제12조(광고게재) ----- <u>무료 또는 유료광고를</u> -----</p>

현행	개정안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